

2023년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안내

우리 공단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산재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보조금 지원 사업을 개시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아래의 내용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서 접수 기간 및 지원 대상

1. 접수 기간: 2023. 01. 17. ~ 별도 공고일(재원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2.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 등 보유 또는 임대사업장(해당 설비에 부착하는 방호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 태양광 설치·작업 공정 보유 사업장(50억 미만 건설업)
 - 엘리베이터 설치·작업공정 사업장(50인 미만 건설업 본사)
- ※ 지원제외 대상

-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산재보험 체납 사업주
- ▶ 당해연도 안전투자혁신사업으로 결정된 사업장
- ▶ 당해연도 융자금 결정 사업장(단, 융자금 결정 취소 후 보조금 지급 결정 가능)

2 보조금 지급 금액 및 비율

1. 지원 금액 : 사업장 당 최대 3,000만원
2. 지원 조건 : 소요금액의 최대 70% (정액지원 등 품목별 상이)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굴착기, 로더, 타워크레인은 차대번호로 구분, 동일 설비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후 3년간 사후관리실시 및 투자완료 시점까지 이행보증보험 가입 필수

추가 지원 기준(항목 당 최대 1,000만원, 중복 불가, 1회만 가능)

- ▶ 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인정 유효기간에 한함)
- ▶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장(강소기업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함)
- ▶ 고위험업종(산재보험료율 상위업종 등)

3 지원 신청서 접수 및 진행 절차

1. 접수 방법: 인터넷(clean.kosha.or.kr)접수
 - ※ 신청방법은 첨부파일의 **첨부2_접수 매뉴얼(사업장용).pdf** 참고
 - ※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방문 또는 우편접수(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4층)
 - ※ 이메일 또는 팩스, 공급업체를 통한 대리 접수 불가
2. 업무 진행 절차



*심사위원회 생략 가능

4 제출 서류

1.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1부(원본)
2.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원본)
3.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원본)
4.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원본)
 - 반드시 사업주 자필 서명
5. 청렴의무 이행서약서 1부(원본)
6.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7.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등) 또는 외관 도면, 설계 근거자료 등
 -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가격근거서류 포함)
8.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정액 또는 기준가격 이외의 품목만 지급, 공사
원가계산서 등)
9. 이동식크레인, 건설기계 등 차량등록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해당 시)
10.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11. 산업재해보상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12. 지원품목 설치 대상 설비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
(현장사진, 공단 기술보고서 등)

위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양식(1~5번) 임의 변경 시에는 제출 서류 일체가 예고 없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급업체를 통한 **대리 접수는 절대 불가능**하며 **해당 서류는 반송**하오니 반드시 신청자가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5 주요 지원 설비

1.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및 권과방지장치 등의 방호장치,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및 지게차 등) 충돌재해예방설비
2. 태양광패널 설치작업을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고소작업대 임차료
3. 엘리베이터 설치작업 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승강용 브래킷
4. 사업장의 사망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단이 따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Lock-out, Tag-out)
 - 프레스·전단기의 안전장치(광전자식, 양수조작식 안전장치 등)
 - 프레스·전단기 자동화 설비(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 금형교환장치(프레스 및 사출성형기)
 - 끼임방지시설(동력전달부 방호덮개, 컨베이어 안전장치 등)
 - 크레인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무선원격제어기 등)
 - 천장크레인(3톤미만, 2009년 이전 제작, 안전검사 불합격 설비에 한함)
 - 산업용로봇 방호장치(방호울, 안전매트, 라이트커튼 등)
 - 사출성형기 취출 및 원료송급 자동화 설비
 - 지게차 안전장치(전·후방 카메라, 전조등, 후미등, 감지센서 및 경보장치 등)
 - ※ 지자체 신고(등록세, 취득세 등)한 지게차에 한하여 지원
 - 추락방지시설(안전난간, 개구부덮개, 이동식사다리, 안전블록세트 등)
 -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낙하방지장치 등)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에 한함)
 - 소형타워크레인(3톤 미만 무인식)의 안전장치(정격하중경고·확인장치 등)
 -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설비(환기팬 및 덕트, 임시소방시설 등)
 - 소음방지시설(소음발생원 밀폐설비, 저소음대체 자동화 설비)
 -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등
 - 질식재해예방을 위한 설비(호흡용보호구, 환기설비 등)
 - 사회적 이슈품목(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역품목 등)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 최소 10개 이상, 안전보건조치 기준에 따른 제품에 한함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예방장치(후방카메라 등)
- 사고사망 고위험작업 대체 설비
-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혼합기)
 - ※ 미신고된 식품가공용 기계를 자율안전확인신고된 설비로 교체 설치하는 경우 지원

6 참고 사항 및 기타 안내

1. 이동식에어컨 및 온풍기 등 지원 시점은 추후 공지 예정
2. 자금지급 결정 전 기 투자 완료된 설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3. 투자완료 시점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체납, 4대 사회보험 소멸 시 지원 불가
4. 신청서류 다운로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
→ 알림마당 → 서식모음 및 자료실
5. 문의: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안전보건부 손동혁 차장(064-797-7512)
윤혁준 대리(064-797-7523)